

수원지방법원

판결

사건 2010가단43579 손해배상(기)

원고 주식회사 ◇◇

용인시

대표이사 김○○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쿠쿠

담당변호사 김◑◑

피고 주식회사

용인시

대표이사 김☆☆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○○

변론종결 2010. 11. 23.

판결선고 2010. 12. 21.

주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45,650,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7. 7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윤▲▲은 2002. 10. 28.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주차장용지(아래에 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쓴다.)를 1,200,100,000원에 분양받아 그 무렵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바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않았다.

나. 김○○은 2003년 9월경 千千육의 소개로 윤▲▲을 알게 되어 윤▲▲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,940,100,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, 지상에 주차빌딩 상가(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차빌딩이라고 쓴다.)을 신축·분양하려고 하였다.

다. 윤▲▲은 2004. 3. 11. 원고 회사(설립 당시 상호는 ■■컨설팅 주식회사였는데 2005. 10. 10.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)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, 설립 당시 주주는 윤▲▲(4,000주), ○○식(윤▲▲의 매제, 3,000주, 이사), ♠♠경(千千육의 처, 3,000주, 감사)으로 되어 있었으나 ○○식, ♠♠경은 명의상 주주로서 윤▲▲이 실질적 주주였다.

라. 김○○과 윤▲▲은 2004. 11. 13. 김○○이 윤▲▲으로부터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차빌딩의 신축·분양사업을 하면서 윤▲▲에 대한 채무(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, 분양대행보증금반환 등 체무)를 이 사건 주차빌딩의 상가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, 위 약정에 따라 윤▲▲은 윤▲▲ 명의의 주식(4,000주)은 千千육에게, ○○식 명의의 주식(3,000주)은 김○○의 인척인 千千철에게,

♣♣경 명의의 주식(3,000주)은 김○○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○○개발 주식회사(아래에서는 ○○라고 쓴다.)의 직원인 백○○에게 각 이전하였다.

마. 그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○○을 지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, ○○ 2005. 5. 18. 원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같은 날 백○○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, 김○○의 친구인 ○○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. 그 무렵 ○○의 주식(4,000주) 중 3,000주는 김○○에게, 1,000주는 백○○에게, ○○철의 주식(3,000주)은 한○○에게 각 이전되었다 (이로써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은, 백○○ 4,000주, 김○○ 3,000주, 한○○ 3,000주가 됨).

바. 김○○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원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백○○의 제안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, 이에 따라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○○은 2005. 6. 13. 자신에게 보통주식 12,000주의, 김○○과 한○○에게 각 보통주식 9,000주씩의 각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, 2005. 6. 16. ○○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위 3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여 증자를 마친 후 위 납입금을 다시 인출하였다(이로써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은, 백○○ 16,000주, 김○○ 12,000주, 한○○ 12,000주가 됨).

사. 한편, 김○○은 2005. 12.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백○○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백○○이 대표이사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김○○과 백○○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, 김○○은 2006. 3. 24. 백○○, 한○○에게 원고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, 위 2인이 주식 이전을 거부하자 2006. 4. 5. 위 2인을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, 2006. 5. 30. 위 2인 및 원고 회사를

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9975호로 자신이 위 2인 명의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

아. 김○○과 백○○은 위와 같은 대립 중에 2006. 6. 2. 백○○이 보유하거나 그가 위임받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3,150,000,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회사가 신축 중인 평택시를 대물변제하는 등의 합의(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의라고 쓴다.)를 하였으나, 김○○은 이 사건 합의 직후부터 그 무효를 주장하다가 2006. 6. 23. 백○○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취소, 해제를 통보하였다.

자. 백○○은 2006. 6. 8. 피고 회사를 설립(대표이사로 ○○식을, 이사로 □□기를, 감사로 □□범을 각 세움)하고, 2006. 6. 14. 한편으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,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○○식을 대신하여, 위 두 회사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차빌딩을 매매대금 10,336,685,862원에 매도 하되, 그 중 10,286,685,862원은 이 사건 주차빌딩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채무 (9,446,655,862원)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융자금채무(840,030,000원)의 인수로 갈 음하기로 하고, 나머지 50,000,000원은 계약일 지급 명목으로 피고 회사 설립시 납 입한 주금 50,000,000원을 원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 회사에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.

차. 주식회사 88엠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타경3003호로 원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주차빌딩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8. 4. 18. 이 사건 주차빌딩은 구분건물로 분할되어 원고 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.

카. 피고 회사도 이 사건 주차빌딩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합10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. 4. 18. 접수 제16××호로 위 법원 2008타경3003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, 피고 회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경료되었다.

타. 피고 회사는 2008. 7. 11.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인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155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(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고 쓴다.)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차빌딩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, ② 또한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○○의 1인 회사이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회사와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,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대전고등법원 2009나593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파. 원고 회사는 2008. 9. 19. 변호사 김○○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을 위임하였는데, 쟝수금 3,300,000원, 성공보수로 55,000,000원(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지급함) 합계 58,3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 내지 5, 8호증,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,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,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.

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, 이 사건 가처분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패소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그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,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상법상의 절차위반 때문이고, 매매계약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실체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부당가처분 또는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,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부당가처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, 오히려, 앞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, 즉, 김○○이 이 사건 합의 직후부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던 점, 백○○은 위 합의 직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김○○이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가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주차빌딩을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○○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1인 주주인 김○○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반대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생략하였다고 보이는 점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1인 주주이며

대표이사인 백○○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가처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.

나. 나아가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, 소송위임자와 수임자인 변호사와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금액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(대법원 1970.8.31. 선고 70다1069 판결), 그 보수액이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이는 경우 그 금액이 성공보수 명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, 이는 소송의 청구금액과 승소금액, 그 소송의 난이 및 진행상황,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,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물가액이 11억 8,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, 위 소송에서 원고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실, 이 사건 본안소송은 3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,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물 가액 및 승소금액,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 회사와 변호인 사이의 약정 보수인 58,300,000원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8,300,000원에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자인하는 13,249,225원을 차감한 45,650,033원($= 58,300,000원 - 13,249,225원$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. 7. 7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

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엄상섭 _____